

정책토론회

공적연금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

일시 | 2015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강기정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장병완 의원. 최동익 의원. 한정애 의원. 홍종학 의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프로그램

시간	내 용	
10:00	축 사	
10:05	사 회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10:10	발 제	I.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I.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10:50	토 론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11:20	종합토론	

목 차

발제

1. **공적연금강화 기본방향-소득대체율 인상.사각지대 해소** 1
원종현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 13
구창우 / 연금행동 사무국장

토론

1. **박차옥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7
2. **문유진**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9
3. **정혜경** / 민주노총 부위원장 31
4. **이찬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35



발제 1

공적연금강화 기본방향

- 소득대체율 인상.사각지대 해소 -

원종현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공적연금 강화 기본 방향

- 소득대체율 인상·사각지대 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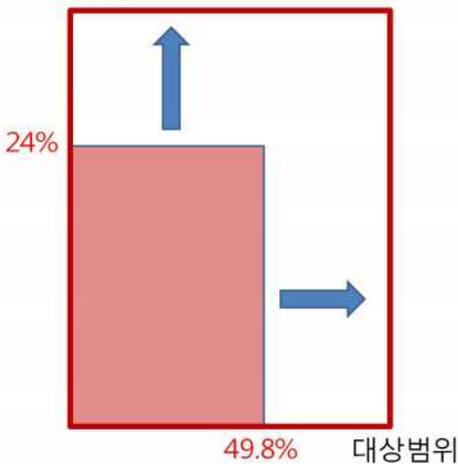
2015. 9. 7.

김연명 (중앙대 교수)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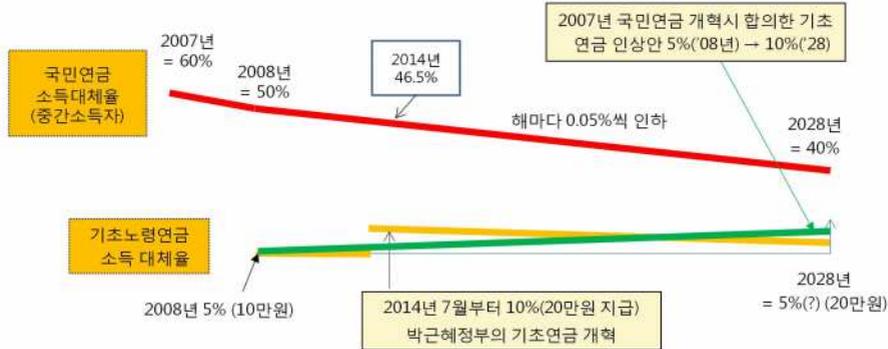
공적연금 강화의 기본 방향

소득대체율



- 2015년 5.2 '실무기구'에서 합의하고 동년 5월 2일 양금 대표기 시행, 합의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은 세가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고 있음.
- 첫째 방향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용돈연금'을 '적정 연금'으로 전환하되 재원은 보험료에서 조달함.
- 둘째, 연금크레딧, 저소득자 연금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임. 재원방향은 논의 필요.
- 셋째,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사용하며 재원은 국고로 충당.
- 세가지 방향은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소득대체율 상향의 필요성



- 국민연금의 인하로 2008년 전체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평균소득의 5%(현재 1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하고 2028년까지 10%로 인상할 예정이었음.
- 박근혜정부에서 2028년에 예정된 10%를 2014년 7월부터 인상하여 지급하는 개혁안을 제출하여 현재 전체 노인의 약 68%에게 A값의 10%(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됨.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삭감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는 상당히 하락할 것이며 소득대체율은 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소득대체율 상향의 필요성

-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나 실제 가입기간은 평균 24년으로 잡으면 소득대체율은 24%이며 실제연금액은 48만원 수준임. 이는 201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61만 7천원에 미달함.
-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년당 지급율이 1.25%로 0.25%p 늘어나 (50%/40년=1.25%) 24년 가입 시 실질소득대체율은 30%가 되고 연금액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60만원에 접근함.
- 즉, 소득대체율 50%가 갖는 의미는 평균적인 국민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음.

	소득대체율 40%	소득대체율 50%
명목소득대체율 적용 (40년 가입시)	80만원	100만원
실질소득대체율 적용 (평균가입기간 24년 적용)	48만원	60만원

비고: 생애평균소득 B값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A값(200만원)과 같은 평균소득자 기준 (2015년)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

-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 이하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50년 이후 연금이 완전히 성숙해도 25%를 넘지 않아 최저소득보장도 어려움.
- 여기에 기초연금이 5% 추가되어도 소득대체율이 30% 수준에 불과함(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삭감되기 때문)
-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신규가입자부터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전망
(제3차 재정계산)

연도	가입기간 (신규수급자 기준)	소득대체율 (신규수급자 기준)
2015	16.7년	24.2%
2016	17.1년	24.2%
2017	17.5년	24.2%
2018	17.6년	20.6%
2019	17.9년	24.5%
2020	18.2년	24.8%
2031	19.4년	23.0%
2040	20.6년	21.8%
2050	21.6년	20.4%
2060	23.7년	22.3%
2070	23.7년	21.9%
2080	25.5년	23.7%
2083	25.8년	24.1%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의 주요 논란

- 보험료 폭탄론 : 보험료를 2배 인상(18%)은 과장된 주장. 실제 인상률의 추정과 세대간 부담률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중산층만 혜택, 사각지대 확대 : 정확한 지적. 그렇다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지 말자?, 그렇다면 유럽식 복지국가의 전망 포기? 그 동안 복지확대를 주장해 온 진보의 주장과 배치. 사각지대가 온존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래서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가 의제로 세팅된 것임.
- 기초연금 무시론 : 공적연금 50%(국민연금 45%+기초연금 5%)에서 국민연금 50%로 구호 변화. 기초연금 무시가 아니라 상황적인 전술의 채택임 (새정치의 2013년 기초연금 트라우마,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 변경으로 새로운 의제세팅시 실익 확보 어려움 등등의 판단)...2013년 기초연금 싸움 시...국민연금을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음..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아 모두 인상해야 함. 특히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는 유럽식 복지국가의 전망(중산층의 공적연금제도로 포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자발적 노후 준비를 못하는가? 안하는가?

-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는 자력구제에 근거한 대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이에 따라 현재 근로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대비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으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세대들의 노후 소득을 위한 대비책이 그리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9세 이상 가구주는 66.7%로, 이중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62.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44.4%, 「사적연금」 25.3% 순임

		준비하고 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전국		66.7	62.8	8.5	25.8	12.3	44.4	10	2.1	0.6
	도시	68.6	63.5	8.5	26.4	12.5	44.3	9.7	2.3	0.4
	농어촌	58.2	59	8.6	22.4	11.2	45.4	11.8	1.2	1.5
성별	남자	72.6	68.9	8.7	23	14.3	40.5	9.3	2.4	0.5
	여자	61.1	55.9	8.2	28.9	10	49	10.9	1.8	0.7
연령	19~29	46.3	66.6	3.9	21.6	13.3	48.2	2.5	3.4	-
	30~39	78.5	64.2	8.1	31.1	15.1	44.5	6.8	2.6	0.2
	40~49	81.1	65	9.1	32.1	12.8	41.5	8.9	2.1	0.2
	50~59	76.8	66.6	8	24.2	10.9	42.9	10.6	1.7	0.5
	60세이상	49.1	49.1	12.2	13	8.7	48.4	21.8	1	2.5
	65세이상	42.4	43.4	14	10.2	8.3	49.9	23.7	0.7	3.5

201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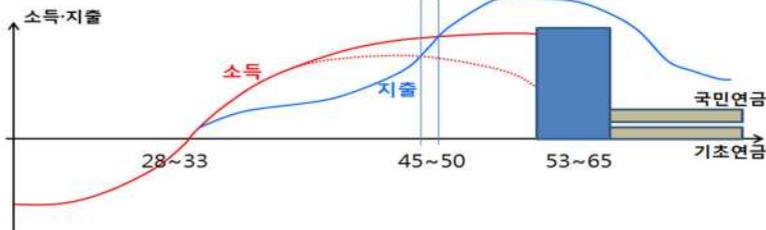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연명 원종현

자발적 노후 준비를 못하는가? 안하는가?

- 노후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30대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 이렇게 노후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4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준비능력 부족을 들고 있으며, 자녀에게 의탁하겠다는 비중 역시 함께 올라가 60세 이상의 경우 거의 90%에 달하고 있음
- 2010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생활비 지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비 지출에서 사교육비의 지출이 필수생활 지출 다음으로 높으며, 이어 병원비, 대출금이자, 학교 등록금 및 월세의 지출이 전체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교육비 절감 및 의료보험의 확대, 주택안정 정책 등이 현 근로가구의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생애에 걸친 소득과 소비 프로파일로 보았을 때, 45세 이후 급격한 소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됨
- 주로 40대 중반 이후 자녀들의 학업이나 혼인과 관련된 비용으로 월 평균 소득대비 2~3배의 대학등록금 및 혼사비용 등으로 인한 지출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경우 65세 이전 공적연금을 수급하기 이전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실제 65세 이후는 공적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비율이 높음

국내 급여소득자의 소득 경로 예시



2015.9.7.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연명 원종현

세대간/소득간 소득비

- 국민연금 가입 초기세대들은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3%-9%), 높은 소득대체율(70%-50%)을 보장받는 반면, 후기 가입세대들은 높은 보험료(9% 이상?)를 부담하고 40%-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 있음.
- 모든 계층에서 수익비가 1을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줌. 즉, 국민연금은 가입만 하면 모두 다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감. 이때 1이 넘어가는 부분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를 '미래세대 보조금'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질 미래세대 보조금은 추정하지 않았음

세대별 국민연금의 평균적 수급부담 구조

연령 (출생연도)	70(1938)	60(1948)	50(1958)	40(1968)	30(1978)	20(1988)	18(1990)
수익비	4.54	3.61	2.27	2.20	2.13	2.05	2.02
내부수익률	29.8	16.8	10.0	8.2	7.2	6.7	6.5

국민연금의 소득 계층별 수익비 비교(배)

가입기간	25만원 (최저소득)	100만원 (중하)	200만원 (중간소득층)	300만원 (중상)	398만원 (최고소득)
10년	8.0	2.7	1.8	1.5	1.4
20년	7.9	2.6	1.8	1.5	1.3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 (크레딧제도)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실질소득대체율을 인상
-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없이 가입기간을 연장시켜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으며 새누리당과 보수학자들이 '노후소득분과'에서 주장한 했으며 대부분이 동의
- 군복무크레딧의 재원은 국고, 출산크레딧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
- 출산크레딧 비용은 크레딧이 주어지는 시점(현재)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미래)임. 즉, 현재의 30살 여성이 둘째아이를 출산하여 1년의 크레딧이 주어지면 그 비용은 35년이 지나 여성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65세에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함. 따라서 크레딧의 재정부담은 현세대가 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
- 현행 사유발생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현세대의 다소 낮은 부담으로 미래 연금급여의 상당분의 절감을 가져오게 됨
- 30세 여성에 대한 연금급여지원 1은 미래 연금급여의 2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음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 (취약계층 보험료지원)

- 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에서는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상당부분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일반 국민들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450만명), 보험료 장기체납자(백만명)를 합하면 최소550만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 영세자영자임.
-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는 이런 취지를 가진 '두루누리사업'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의 사용처를 논의해야 함.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16년 1,692억원, 2020년 5,263억원으로 5년평균 3,446억원임.
- 취약계층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미래 연금급여 혹은 사회복지 지출에 현재 지출 분의 수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한 지원액 (억원)

연도	개혁전 예상지출액	개혁이후 지출액	개혁전후 차액(A)	A*0.2
2016	101,388	92,924	8,464	1,692
2017	108,696	95,980	12,726	2,543
2018	116,430	99,344	17,086	3,417
2019	125,387	103,791	21,596	4,319
2020	134,050	107,734	26,316	5,263
평균	117,190	99,954	17,237	3,446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 (기초연금 강화의 문제)

-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되어 보험료 미납부자, 즉 사각지대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국민연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약 569만명(장기체납자+납부예외자)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 인구임.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면 사각지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이런 이유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금크레딧제도 확대와 공무원연금 절감분의 일부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제로 설정한 것임. 즉, '5/2'합의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책을 세운 것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규모(장기체납자+납부예외자) (2014)

전 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2,113만명	1,230만명	387만명	112만명 (5.3%)	457만명 (21.6%)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 (기초연금 강화의 문제)

- 유럽식 복지국가의 핵심은 중산층이 겪는 사회적 위험(노령, 의료, 실업, 혹은 아동이나 노인케어)을 공공복지제도가 대부분 해결해주는 사회시스템임. 즉, 노후에 공적연금 하나로 생활이 가능하고, 공적 의료보험이 의료문제를 해결해줌. 따라서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이 없는 것이 유럽식 복지국가의 특징임. 반면 영미형 복지국가는 중산층조차도 공공복지급여가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사보험이나 기업복지에 의존해야 함.
- 한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중산층의 삶을 보호하지 못함. 따라서 명목소득대체를 50%로 인상은 공공복지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을 '최저수준'이 아닌 '적정수준'으로 높여나가 중산층의 사회적 위험을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구조로 나가는 것임. 즉, 명백하게 유럽식 복지국가 전략을 지향하는 것임.
- 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기하고 기초연금만 강화하는 전략은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민강보험과 퇴직연금(기업연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귀결될 확률이 많음. 따라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가 영미형 복지국가 모습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즉,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진보진영의 복지국가 전략과 맥이 닿아 있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연명, 『복지국가, 불평등 해소의 대안인가?』, 이정우, 이창근(편),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 20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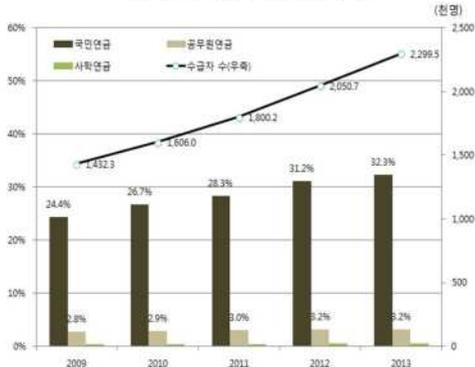
현 부모세대(30~50대)의 '이중부담'과 사회적 연대

-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 부모세대의 '상대적 이익'과 자식세대의 '상대적 불이익'은 조부모세대(60대 이상)를 사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부모세대(30-50대)의 '이중부담(double payment) 문제를 고려하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금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1930년대-50년대 농업사회에 태어난 세대(A세대)로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특례노령연금'처럼 소액의 연금만 받음. 따라서 부모세대인 지금의 30-50대 세대(B세대)는 '사적이전'이라 불리는 생활비를 A세대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B세대는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 강제연금인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특정세대는 이러한 '이중부담' 문제에 필연적으로 노출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긴세대'라 부름.
- 그러나 30-50대 세대들의 자녀세대(C세대)들은 B세대가 어느 정도 공적연금을 받기 때문에 B세대가 A세대에게 해주었던 만큼의 '사적이전'을 하지 않아도 됨. 이런 상황에서 B세대의 '이중부담'문제를 C세대가 일부 나누어지는 것이 세대간 공평성에 부합됨
- 그러므로 현재 가입하는 세대가 기금운용에 따른 초과수익분을 이전세대에 이전분으로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 사적이전분의 공적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의 기금운용 수익은 현재 세대의 조세 혹은 기업경영의 성과에 따른 자산의 회귀로, 미래 수급자에 대한 자산을 이전하고 있음을 의미함

현재의 노인 빈곤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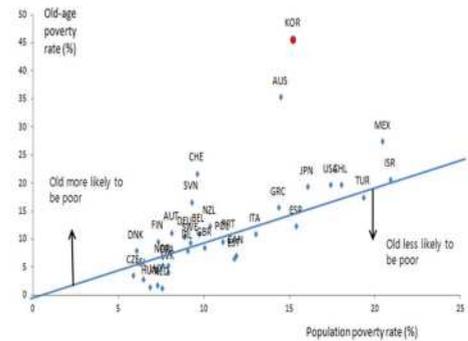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말 기준 총 229만 9천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36.0% 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평균 2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국내적으로 비교를 해 보아도 일반 평균 빈곤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일반 빈곤율은 15.2%로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6%로 국내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 대비 거의 세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수와 비율



통계청,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수, 공적연금 수급률, 「고령자통계」,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OECD 국가의 일반빈곤율과 노인빈곤율 비교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www.oecd.org/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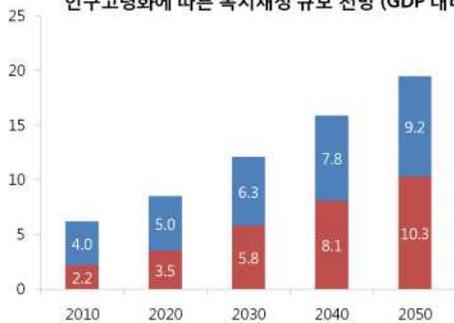
현재의 노인 빈곤문제

- 노인빈곤율이 49%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의 빈곤한 노인세대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함. 현세대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세대의 국민연금 인상보다 기초연금 인상과 내실화가 먼저임
-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되어 보험료 미납부자, 즉 사각지대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유럽식 복지국가의 핵심은 중산층이 겪는 사회적 위험(노령, 의료, 실업, 혹은 아동이나 노인케어)을 공공복지제도가 대부분 해결해주는 사회시스템임. 즉, 노후에 공적연금 하나로 생활이 가능하고, 공적 의료보험이 의료문제를 해결해줌. 따라서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이 없는 것이 유럽식 복지국가의 특징임. 반면 영미형 복지국가는 중산층조차도 공공복지급여가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사보험이나 기업복지에 의존해야 함.

현재의 복지지출 증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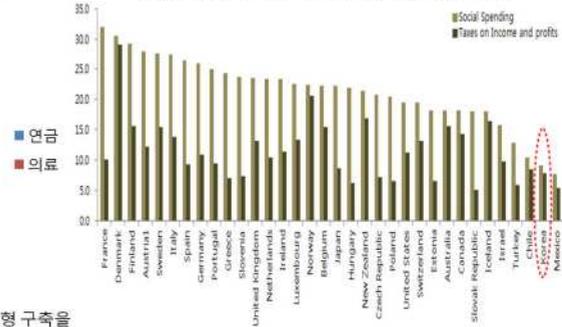
- 국민연금은 초기 가입 세대는 보험료는 낮고(3%-9%) 소득대체율은 높은 반면(70%-60 or 50%), 미래세대는 보험료는 높고(9% 이상?) 소득대체율은 낮아(2028년까지 40%) 미래세대가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부담과 혜택에서 세대간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함
- 미래의 복지재정에 따른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미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의 변경을 고려하기에 앞서, 정부의 자구적 노력이 가시적이어야 할 것임
- 현재의 노인 복지를 위한 제도마련으로 미래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현재의 제도 지원이 오히려 미래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규모 전망 (GDP 대비)



박형수(2011), 「복지재정에 대한 몇 가지 논점」,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발표자료, 한나라당 재정분과위원회 세미나 자료.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소득세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



발제 2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

구창우 / 연금행동 사무국장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미국의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64년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 그 문제는 재정적, 경제적 혹은 인구학적인 것이 아니다. 표준적인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할 어떤 근거도 없다. 정치적인 신뢰의 위기가 온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압도적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된 결과 상당한 가치가 있는 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연금제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자칭 연금개혁론자들이다.”

Dean Baker and Mark Weisbrot, The Social Security: The Phony Crisis,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99, in the Preface.

- 2020년대 후반 혹은 2030년대 초반 기금고갈이 예정된 미국 국민연금제도 (OASDI) 에 대한 한 경제학자의 논평

1. 들어가며

흔히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낮은 급여수준, 사각지대 문제를 거론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약 344천원이고, 200만원 평균소득자가 20년 가입해도 수령하는 액수가 40만원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약 1,500만 명으로 18세~59세 인구의 절반 이상, 전업주부 등을 제외한 실질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의 약 27%가 사각지대에 있다. 그 결과 2030년이 되어도 연금수급자는 노인 인구의 40.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3년 재정추계 인용).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취약성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개선 효과가 즉각 나타날까? 현재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국민들 다수는 먼저 냉소와 불신을 보낸다. 88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이제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아직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강화를 논의하는 게 힘을 받기는 쉽지 않다.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린다. 현재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안 내고 안 받겠다는데’, 또 ‘상관안할 테니 돌려주기만 하라는 데’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게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일까?

현재 국민연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다.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국민연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알아서 가입할 것이다. 정부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함부로 제도와 기금운용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먼저 출발해야 한다.

2. 국민연금 불신의 배경

국민연금은 다른 사적연금에 비해 장점이 많은 제도다. 보험료 대비 평균수익비가 1.9로 약 1에 머무는 사적연금보다 높다. 국민연금에 10만원 내는 것이 개인연금에 20만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다.

< 국민연금 -퇴직연금 - 개인연금 수익비 비교 >

소득수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00만원	2.8	1.01	1.08
198만원	1.9		
300만원	1.6		
408만원	1.4		

※ (가정) 2015년부터 30년간 가입하고, 20년 동안 수급하는 국민·퇴직·개인연금 결과
 ※ 출처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보고서(5권), 2015.3, pp. 15
 4 ~ 171

특히 사업장가입자(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약 1,500만 명 중 약 1,200만 명이 사업장가입자임)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수익비는 3.8배가 넘는다. 별도의 영업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관리비용도 훨씬 적다. 또 연금은 성격상 장기간 가입일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클 수밖에 없는데,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72법칙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물가상승률을 2.4%라고 하면 현재가치는 절반으로 준다. 즉 지금의 1억이 30년 후에 현재가치로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다. 사적연금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다보니 어떤 얘기를 해도 강력한 저항만 초래한다. 2004년에는 재정안정화 개혁 추진과 강제 징수 처분에 대한 불만이 복합되면서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대규모 안티국민연금 사태도 발생했다. 2013년에도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추진하면서 다시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 불신의 배경은 88년 제도 도입 후 10년 주기로 있었던 1998년, 2007년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부터 기인한다. 두 차례 재정안정화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은 급격하게 삭감됐다. 98년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70%→60% 인하, 수급연령 60세→65세로 상향했는데, 이는 수급연령 상향까지 감안하면 약 30%의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2007년에도 역시 소득대체율 60%→40% 인하조치로 급여의 1/3이 다시 삭감됐다. 그 결과 현재는 애초 도입 당시 국가가 약속한 급여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가 채 나타나기 이전에 추진된 급격한 제도개혁은 당연히 국민 불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 개혁 추진과정 역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실종되고 정치권의 일방적인 타협의 과정이었다. 노후빈곤 해소의 문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강조보다 재정안정화 프레임이 득세했다.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이 없으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후 세대 갈취론, 보험료 폭탄론 등 선동적인 논리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역사가 100년이 넘거나 보통 60~70년이 넘는다. 우리나라처럼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격하게 개혁을 진행한 경우는 드물다. 보통 40~50년이 지난 80~90년대에 제도가 성숙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힌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어쩌면 국민연금이 시작된 시점이 서구에서 연금개혁이 진행될 시기와 겹쳤다는 점이 불행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 성숙 이전의 급격한 개혁과 일방적인 개혁과정이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명백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존립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그 산물일 수 있다.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40년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대 40년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비로소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개혁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진행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3.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

□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불신의 핵심은 무엇보다 기금소진에 따른 수급 불안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부분적립방식으로, 그 해 걷는 보험료로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에 기반하되 급격한 재정 부담에 대비해 완충 역할로 기금을 현재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기금고갈론이 유포된 결과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자.

“국민연금과 별도로 사적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민연금 재정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이후 연금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사실 법적으로 지급 보장 근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연금수령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인터넷에 연금보험을 검색하면 사적연금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다. 인터넷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는 민원들도 마찬가지다. 부정확한 내용이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한 상황에서는 어떤 개혁 논의도 무의미하고 부정적인 인식만 강화한다.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2013년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인식하고 지급보장과 관련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으로 법통과가 끝내 무산되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할 경우에는 국가 잠재부채가 늘어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지급준비금을 국가부채로 잡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관련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된 총당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 시 국가신인도 문제 운운은 핑계라 본다. 국민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서 드러나듯 국민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하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을 적립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여 거대 기금을 계속 관리하고 싶은 의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으로 전환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급보장 명문화는 거부하는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특히 지난 5월 청와대와 정부는 ‘기금고갈 폭탄론, 보험료 폭탄론, 세대 간 도적질 발언’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겼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 지속적인 제도개선 시행

한편 국민연금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민연금제도가 변화된 사회적, 시대적 환경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있다. 국민들이 실제 제도와 접할 때,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연스레 불신이 생긴다. 2004년 안티 국민연금사태는 인터넷에서 유포된 ‘국민연금 8대 비밀’에서 촉발됐는데, 강제 체납 처분과 더불어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소득에 따른 수급권 제한 등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불만도 주요 이유였다.

제도개선이 변화된 사회적, 시대적 환경을 제 때 쫓아가지 못한 이유는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고, 제도개선의 주체도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운동의 주체도 형성되지 않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비용 수반 등의 이유로 수세적인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공적연금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은 95.7월~2010.6월까지 360만원에 고정되어 있다가 2010.7월부터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2015년 현재 421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장 가입자의 약 1,230만명 중 226만 명(18.4%)이 상한액 이상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급여산정의 기초인 A값(가입자평균소득)과 B값(생애평균소득)을 실제보다 낮추어 급여 수준을 약화시키고 있다. 소득상한선을 95년 당시부터 연동했을 경우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263만원)의 2.5배 정도를 감안하여 650만 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당연(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도달하면 의무가입이 끝난다.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면서 괴리가 발생하고, 고령자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동안 계속 납부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더 이상 납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추가로 늘릴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을 감안하여, 사업장 가입자에 한해서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사각지대의 대부분은 일용직,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로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절실하다. 현행 10인 미만 사업장,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대비 130%(164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지원, 영세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지만, 서구의 공적연금에 비해서는 그 혜택이 아직 부족하다. 가입기간을 늘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녀 양육기간에 대한 크레딧 제도 신설 및 청년 실업이나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서도 크레딧 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		현행	개선
출산	가입인정기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최대 50개월)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및 산입기간 제한 폐지
	소득인정액	A값	좌동
군복무	가입인정기간	6개월	군복무기간 전체
	소득인정액	A값의 1/2	A값
실업	가입인정기간	최대 1년	산입기간 제한 폐지
	소득인정액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A값의 1/2

다섯째,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부부 중 1인이 사망하면 본인 급여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 중 많은 것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다. 결국 부부 중 1인이 사망하면 못 받는 것으로 인식 돼, 국민연금 가입 회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미선택 급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추가지급을 50% 정도로 상향하되, 장기적

으로 해외 사례처럼 한계액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분할연금수급권을 개별수급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자가 이혼 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자(기여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 장애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혼시점부터 가입이력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장애4급 일시금을 연금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3급 이상은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2년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3급이나 4급의 소득활동자와 소득감소율을 감안할 때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급 이상 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소 보장되고 있다. 해외사례에서도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고,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급여수준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100%/12 매월지급	80%/12 매월지급	60%/12 매월지급	225% 일시금 지급
소득활동자	7.0%	16.9%	32.8%	49.3%
소득감소율	63.1%	46.0%	35.2%	27.1%

□ 기금운용 신뢰회복

국민연금 신뢰회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기금운용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들 상당수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잘못 운용해 기금이 고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초 기금운용의 불신은 정부가 과거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강제 예탁제도를 통해 기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현재도 기금을 이용해 틈만 나면 주식시장이나 경기 부양에 활용하려는 것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행 가입자 대표와 기금운용본부 중심의 기금운용체계가 비효율적이어서 기금고갈이 발생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해 주식, 대체 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강화해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까운 논리이고, 자칫 잘못될 경우에 국민연금제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수익률을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가.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나.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익률 평균
국민 연금	한국 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5.3	6.3
	일본 GPI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2.3	2.3
	캐나다 CPPI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18.7	6.1
	스웨덴 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13.7	5.1
공무원 연금	미국 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2.4	5.2
	네덜란드 AB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14.5	5.9
국부 펀드	노르웨이 GPF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7.6	5.2

- 주 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설립(1999년 11월) 이후 실제 성과가 산출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연기금별로 성과를 비교함
 2. NPS, AP, ABP, GPF는 12월 결산, GPIF, CPPIB는 3월 결산, CalPERS는 6월 결산임
 3. 결산 월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비교를 위해 동년으로 준용함
 4. 반올림에 의한 단수차이 있음
 5. CalPERS 2014년 수익률은 예비보고 된 것임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ABP 수익률의 경우 2005~2014년 연차 보고서, 2000년~2004년 홈페이지 참고)

부분적립방식에서 자연스런 기금소진의 문제를 기금운용의 수익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기금운용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기금운용의 고수익 추구는 고위험을 동반하고, 달리 보면 금융투기에 지나지 않는다. 전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에는 결코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 아니다. 기금소진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기금을 운용하여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다가 제도가 성숙하면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 적립한다 하더라도 2~5배 정도 수준의 적립배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기금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수익률이나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안정화의 다른 표현은 안정적인 급여 지출 보장이 아니라 향후 수백 조, 수천 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기금 적립금의 항시적 유지일 수 있다. 과연 그 재정방식이 국민연금과 가입자인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이제라도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제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보험료율과 급여율), 정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출산율, 경제

활동참가율, 소득상승률 등), 기금운용이 담당해야 할 부분(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한 기금운용 목표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등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당할 위험성이 커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은 정부와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한 목표수익률을 부여하고, 가입자 대표가 책임성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한다.

4. 나오며

지난 5월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과정에 대한 평가가 입장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한국사회 노후빈곤의 문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의 희생과 적극적인 투쟁의 결과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동안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오히려 노후빈곤을 방치하고, 오로지 재정안정화 개혁을 위해 국민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한쪽에선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고, 다른 한쪽에선 천문학적인 기금이 쌓이고 있다. 공적연금은 노후임금이고, 사회적 권리이다. 공적연금이라면 최소한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함부로 깎는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을 하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당연히 국민연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더 낼 테니 더 받자고 할 수 있다.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자.



토론 1

토론문

박차옥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별지참조〉



토론 2

토론문

문유진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별지참조〉



토론 3

토론문

정혜경 / 민주노총 부위원장

1.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는 정치적·제도적 전환점을 만듭시다.

-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2013년 기준 49.6%, OECD평균 4배). 그러나 이를 해소해가기 위한 정치적 노력 부재.
- 그동안 한국의 연금개혁은 소위 ‘기금고갈론’에 입각한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왔음. → 저연금(낮은 소득대체율), 무연금(높은 사각지대) 문제 심각 → 공적연금의 본래 목표인 <노후빈곤예방>과 <소득보장> 기능뿐 아니라, <국민신뢰>까지 상실.
- 이번 사회적 기구 및 특위에서 노후빈곤과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2. ‘사적연금 활성화’가 아닌, 국민연금 강화가 필요합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 노인빈곤에 대한 해법의 차이 존재.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해법으로 제시. 그러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 취약. 오히려 소득불평등 심화.
-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역할 때문. 노후빈곤 문제는 현재도 심각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음. 이조차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세대에게 여전히 문턱이 높음.
- 지금이라도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초연금을 제대로 개선하는 사회적 노력 절실.

3. 제도불신과 세대갈등 부추기는 정치적 왜곡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후세대 갈취’ 등 악의적인 왜곡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등 유발.
- 이번 사회적 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움.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사실상 정치권이 조장해온 측면이 강함.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를 거부하고, 기초연금조차 애초 2007년 여야합의했던 수준보다 중장기적으로 낮아지도록 개악.
- 국민연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논의는 이번이 최초인 셈. 이번 사회적 기구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그동안의 정치권 중심의 일방적인 연금정치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4. 마치며.

- 사회적 기구가 우리 사회 노후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정치적, 제도적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실제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고, 아직도 사회적 기구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중요한 의제를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지금은 어떠한 책임과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음.
- 국민 노후 문제는 여야, 노사, 노인·청년, 여성·남성 할 것 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하루속히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 노후가 불안한 국민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함.



토론 4

토론문

이찬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몇 가지 쟁점

- 연금 재정에 있어서 제도(보험료,인구)와 기금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관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이 찬 진

1. 우리나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입법상의 설계 구조

-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1973년 12월 24일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제1차 오일 쇼크의 여파로 시행 무기한 연기{단순 소득비례연금, 20년 가입시 퇴직 직전년의 24%+ 직전 3개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24% + 20년 초과시 1년마다 0.4 배 가산 : 40년 최대 56%}
- 1986.12. 24.자로 법률 전면개정, 1988.1.1.자로 시행[40년 가입 기준 70%/ 88년-92 3%, 93-97 6%(2;2;2), 98년 이후 9%[3;3;3- 법개정으로 4.5:4.5]
1986년 12월 입법 당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 수준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의 붕괴 현실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국민의 노후대책 차원의 최저 생활보장 수준으로 입법적으로 결정됨.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당시의 직장가입자들의 노부모 부양 현실과 노사 양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여 단계적 인상을 예정함으로써 연금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세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적립방식 제도화
- * 고도 성장기(고도 명목경제성장율, 인플레이션 및 낮은 실업율과 안정적인 일자리 등 이에 따른 연금보험료 수입의 폭증, 높은 연금기금 기대수익을 인구구조 중장기적 팽창 등을 감안) 초기 낮은 연금보험료율로 출발하여도 연금수지 재정 계산시 변수들을 반영한 결과 높은 소득대체율의 설계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IMF 구제금융 상황시기인 김대중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60%로 감축(가입기간 1년에 1.5배)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소득대체율 무려 40%로 감축(기초노령연금 5%+ 20년 후 10%)
- 현 실태 : 국민 일반의 평균 가입기간을 20여년으로 볼 때 실질 소득대체율이 실제 소득월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20%를 겨우 넘는 수준, 국민 일반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50만원 남짓의 용돈 연금 수준으로 전락함. 공공부조 수급액보다 연금 수급액이 낮게 됨.
- 재정방식
 다른 나라들의 사례인 1889-1957년 동안의 독일과 1935-1943년 기간 동안의 미국이 적립방식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부분적립방식이었다가 성숙기에 연금수급자와 연금가입자가 균형을 유지할 무렵에 부과방식 내지 재정수지를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보험료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임.

2. 연금 재정 부담 구조 및 기금의 책임의 한계

- 기금은 연금 성숙기까지 보험급여보다 보험료 수입이 많아서 자연발생적으로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임
- 제도 도입 이후 보편적인 연금가입자들이 전부 은퇴하는 무렵이 연금성숙기가 되며, 그 때까지는 당연히 지출보다 수입이 큰 구조로 설계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성숙기까지는 그 책임준비금의 역할을 하고, 성숙기를 전후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예정되며, 보험료 인상분과 기금 적립금(적립기의 기금운용수익 포함)을 적절히 배분하여 연금재정조달의 충격을 완화하고, 그 충격을 장기간 분산하는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임.

* 기금고갈론 비판

- 공적 연금은 완전 적립식의 금융상품이 아님. 본질적으로 세대간의 부양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임.
-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2배 인상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존 제도의 틀을 부정하고 사실상 완전 적립방식을 전제로 하여 현 세대가 받을 연금 급여 예상액을 모두 현 세대가 불입하라.는 것에 다름 아님.
이는 현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부모부양과 연금보험료 부담에 더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의 평균 저축율 4%를 감안하여 볼 때 국내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기 위축의 부작용마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클 것임.
- 한마디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대간의 부양을 본질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임.

3.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

- 기금운용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도외시한 채 기금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목표 및 최저수익율을 설정할 경우 이는 안정성 기초 하에 수익성을 추구하여야 할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하고 허용위험을 과도하게 높이고 변동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비중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국내외 경제 변동 상황에 따라 기금 자산의 변동 폭 증가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개정법률안이나 기획재정부의 개정법률안은 과도하게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축소 또는 배제시키고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자금운용 기능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것이고,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재정계산시 반영된 재정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기금운용체계가 될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기금의 안정성 측면이 훼손될 위험이 커서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움.

- 따라서, 기금운용의 원칙 중 재정계산, 재정목표, 목표수익율, 최저수익율, 안정성 기반 하의 수익성 추구 등의 기금운용기조 및 전략적 자산배분, 기금운용계획 등은 상근 전문가 조직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가입자 대표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독립 상설인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금운용위원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전술적 자산배분 및 실제 운용은 전문성이 강화된 집행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체계가 발전할 필요가 있음.

4. 적정한 재정목표의 설정과 연금보험료 조정시기(세대간의 부담의 형평성 관련)

가. 오 해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연금을 주기 위해 젊은 세대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여(22%) 경제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또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급여를 못받게 되므로 차세대만 현세대를 위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비난이 있음.

나. 진 실

- 1) 그러나 이는 ‘공포마케팅’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어도 한국 노인들의 대량빈곤 문제가 지속될 것임.

2012년에 GDP의 0.9%인 약 11조원을 지출한 국민연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50년에 GDP의 5.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소득대체율을 가령 20년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25% 인상할 경우 2050년에는 GDP의 6.88%정도가 되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A값의 10%로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급 대상자를

70%로 유지하면 2.4%, 합계 9.28%의 지출이 예상됨. 국민연금(50%기준 -8.125%)과 기초연금으로 2060년의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의 규모를 넉넉하게 잡아도 최대 10.925%가 되는데 이 부담으로 인해 후세대는 파국을 맞을 것인가? 이는 다른 나라와 지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매우 과장된 주장임을 알 수 있음.

(표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액의 GDP 대비율 (단위: %)

* ()안은 소득대체율 50% 가정시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지출 비중	65세 이상 인구				지출 비중	65세 이상 인구	
국민연금(A)	0.9	11.0	1.4	2.5 (3.125)	3.9 (4.875)	5.5 (6.875)	37.4	6.5 (8.125)
기초연금 70% (C)	0.3		0.9	1.6	2.1	2.4		2.8
기초연금 100%(D)	-		1.2	2.4	3.5	4.3		4.7
합계(A+C)	1.2		2.3	4.1	6.0 (6.975)	7.9 (9.275)		9.3 (10.925)
합계(A+D)	-		2.6	4.9	7.4	9.8		11.2

2010년에 OECD 28개국은 노인인구가 14.7%일 때 연금으로 GDP의 평균 9.3%를 지출했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약 26% 수준에서 GDP의 11.7%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EU 27개국은 13.1%). 연금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지출을 억제한 효과이며 최근에는 낮은 연금지출로 노인 빈곤 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임.

반면 한국은 2050년에 노인인구가 38.2%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나 연금지출은 최대 GDP의 9.2%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됨. 즉,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두 번째이나 연금지출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소득대체율을 50%, 노인인구가 최대치로 추정되는 206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OECD 28개국 평균치에 약 1% 이상이 모자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연금지출이 미래세대를 파국으

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의미함.

즉, 한국의 경우는 과도한 연금지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낮은 연금지출로 오히려 노인의 대량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려해야 될 상황임

(표4) 각국의 노령인구비와 공적연금의 GDP대비 지출비율

	2010		2050	
	GDP 비율	65세인구비	GDP 비율	65세인구비
Australia	3.6	13.5	4.9	22.2
Austria	14.1	17.6	16.4	27.4
Belgium	11.0	17.6	16.7	27.7
Canada	5.0	14.1	6.3	26.3
Czech Republic	9.1	15.4	11.0	31.2
Denmark	10.1	16.3	9.6	23.8
Estonia	8.9	17.0	8.0	23.8
Finland	12.0	17.3	14.9	27.6
France	14.6	16.7	15.1	26.2
Germany	10.8	20.4	13.0	31.5
Greece	13.6	18.9	15.4	32.5
Hungary	11.9	16.7	13.5	26.9
Iceland	4.0	12.1	6.9	21.5
Ireland	7.5	11.4	11.4	26.3
Italy	15.3	20.5	15.7	33.6
Japan	9.7	23.1	13.7	39.6
Korea	0.9	10.9	9.8(5.5) ¹⁾	38.2
Luxembourg	9.2	14.6	18.1	22.1
Mexico	2.4	5.9	3.5	21.2
Netherlands	6.8	15.5	10.4	23.5
New Zealand	4.7	13.0	8.0	26.2
Norway	9.3	15.0	13.9	23.2
Poland	11.8	13.5	10.0	29.6
Portugal	12.5	18.0	13.1	32.0
Slovak Republic	8.0	12.3	12.2	28.3
Slovenia	11.2	16.4	17.9	30.2
Spain	10.1	17.0	14.0	35.7
Sweden	9.6	18.3	9.9	23.6
Switzerland	6.3	17.5	8.6	28.3
Turkey	7.3	7.7	11.4	-
United Kingdom	7.7	16.0	8.2	24.1
United States	4.6	13.1	4.8	20.2
OECD28	9.3	14.7	11.7	-
EU27	10.8	-	13.1	-

자료: OECD, Pension Outlook 2012, 일본은 Fukawa and Sato (2009:39), 인구추정은 OECD Factbook 2011. 한국 9.8은 앞의 표, 5.5는 국민연금지출

1) 50%가정시 (9.275)/(6.875)

2)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기금은 성숙기까지는 그 자체로 책임준비금이며, 성숙기 이후에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완충자금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만 각 나라들마다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배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나라마다의 사정을 감안한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로서 필요시 재정조달을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조정 또는 일반 조세를 통한 재정 조달을 하게 되므로 기금 고갈에 따른 연금 급여 중단 위험은 발생하지 않게 됨. 이러한 것은 유럽의 평균 100여 년이 된 공적 연금제도사에서 세대간의 부양 제도로서 유지 발전된 과정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입증된 것임.

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GDP 대비 규모의 위험성

-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2014년말 현재 GDP의 35%로 세계 최대임. 현재도 거대 기금을 수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위주로 운용하는데는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연못 속의 고래’). 결국 국내 기금운용의 한계로 인하여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것임.
- 연금의 성숙기 이후 소득대체율 50% 가정시 국민연금의 1년간의 연금급여 책임준비금은 (표3)에서 GDP 대비 2040년 4.9%에서 2060년 최대 8.1%로 추정됨. 그런데, 정부의 자료대로 할 경우 2035년 내지 2040년부터 GDP의 100%를 돌파하는 천문학적 거대 기금이 됨
- 그런데, 지난 5월 정부 발표 자료는 현행 제도와는 전혀 다른 사실상 완전 적립 방식에서의 재정 방식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꿀 경우 현행 대체율로는 보험료율을 14.11%로 올려야 하고, 50%로 인상할 경우에는 16.99%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의 한계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추계보다 훨씬 큰 기금이 형성되고, 국내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연구 과제

- 국채를 포함한 채권 투자의 문제점 : 현재 국내 유통시장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만으로도 수익률이 왜곡되고 있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는 평가임. 향후 기금규모의 성장률이 국내 채권 시장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데 향후 채권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여 기금이 적정수준을 넘어선 높은 비중을 보유하게 되면 적정수준을 초과한 부분은 금융 상품의 한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후세대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경청할 부분임. 따라서 기금의 국내 채권의 중 장기적 보유 가능 비중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재정사업으로 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국채를 발행하여 연금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현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차세대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여유자금 운용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고려하여야 함.
-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현재도 한계치에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결국 향후 기금은 해외 주식, 해외채권 및 해외 중심의 대체투자과 같은 실물 투자 중심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게 됨
- 이와 같은 기금운용의 한계 상황에서 지속적인 강제저축을 하여 그 중 일부가 국내 구매력에서 사장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적립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 그 자금을 해외 투자 중심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국민경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분석될 필요가 있음

라. 연금의 성숙기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처럼 부과방식의 재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결국 연금의 성숙기로 예정된 2040년대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자 수와 연금가입자의 숫자가 안정적인 구조 및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임. 그리고 2060년 기준으로 적립배율 2배 내지 3배 수준(GDP대비 16%– 24% 상당)의 책임준비금을 유지하면서 단기 또는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보험료 내지 조세 부과율을 조정하는 부과방식의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임.
- 성숙기 이후 기금의 소진 속도를 감안한 급격한 연금보험료 인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숙기 이전부터- 현세대의 은퇴 이전부터 연금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세대간의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차세대의 제도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인구 구조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 내지 확대하고, 차세대의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임.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연금기금의 사회투자방안에 대하여도 연구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토론회] 공적연금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발행일 2015. 9. 7.

발행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Copyright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15 ※본 자료는 연금행동 홈페이지
www.pensionforall.kr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종로사무실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4층
영등포사무실 150-035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4길 11-7 2층